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20호
- 나. 제출자 : 엄셋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4. 15.
- 라. 회부일자 : 2024. 4. 15.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애주기별 올바른 성장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정책의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라. 영양·식생활 교육사업(안 제5조)
- 마.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안 제7조)

사. 재정지원, 교육 재료비 및 교육 재료비 감면(안 제8조 ~안 제10조)

아. 민·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4.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민의 생애주기별 올바른 성장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 정책의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실시 및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보급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 확산에 대하여
  - 안 제8조에서는 영양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재료비 감면에 대해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
-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에 따른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